

	Chap5, 배타권 침해 실제 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집행관의 집행범위와 확인의무, 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2025. 9. 29. 선고 2025마630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파기환송
제목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참조),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룰 수는 없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 집행관의 집행범위와 확인의무 및 집행에 관한 이의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
-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권원의 내용(특허침해물건의 특정)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대상의 특정은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
- 다만, 피보전권리(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나 소멸 등 실체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함.
- 요컨대, 집행의 형식적·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권리관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결정임.

(2) 사안개요

- 신청인(가처분채무자): 단열파이프 제조업체
- 피신청인(가처분채권자): 특허권자
- 배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본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림.
-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집행관은 공장 내 제조장치 7대에 대해 가처분집행을 실시함.
- 신청인은 “이 장치들은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엔코더’가 빠져 있으므로 집행대상이 아니다”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

- 쟁점:
 - ① 집행관이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하는가
 - ②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소멸 주장이 집행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3) 법리

쟁점 ① 집행관의 집행대상 특정의무

- 법리 요지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는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며, 특정 물건의 생산·판매·사용 금지를 명하기 위한 절차임.
 -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대상(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 특히 **물건발명**의 경우, 제품명·형식번호·도면·사진 등을 활용하여 **다른 물건과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집행관 역시 집행 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특허침해물건의 명칭·구성·도면 등)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해야 함.

쟁점 ② 집행에 관한 이의의 범위

- 법리 요지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예: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소멸)**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아님.
 - 그러한 주장은 **가처분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절차로 다투어야 함.
 - (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참조)

(4) 특허법원(원심법원) 판단

-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
- 이유:
 - 신청인 공장 내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장치로,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엔코더의 존재 여부**는 외관상 확인 가능하므로,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집행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5) 대법원 판단

- 원심을 파기환송.
- 이유:

- 집행관은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의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을 종합하여 **결정 당시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던 장치**를 기준으로 집행해야 함.
-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집행대상 식별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 제거로 인해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주장으로,**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서 부당함.

(6) 결론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이유:
 - 집행관은 가처분결정상의 특정요건을 기준으로 집행대상을 판단해야 하며,
엔코더의 유무와 같은 실체적 쟁점은 집행이의로 다룰 수 없음.
 - 신청인의 주장은 **집행의 적법성**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에 해당.

(7) 한줄 키워드 요약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특정요건에 따라야 하며,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나 구성요소 변경 여부 등 실체적 쟁점은 집행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8) 추가 정리 포인트

- 본 판례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단계에서의 권리구제수단 구별**을 명확히 함.
- **집행이의**는 절차적 적법성에 한정,
실체적 권리 다툼은 가처분이의나 취소절차로 구분하여야 함.